

제359회 임시회
2017. 10. 17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은 보건복지부 「2018~202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지침」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
- 위탁기간 종료('17.12.31.)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사무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('18.01.01.~'20.12.31.)
- 선정기준 : 「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지침」요건을 충족한 단체
 - 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, 연구기관
 -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·단체로서 아동복지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(단체)
- ※ (현)수탁기관 : (사)일하는공동체('15.1.1~'17.12.31)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예 산 액 : 169,260천원(국비 84,630, 도비 84,630)
- 주요사무
 -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, 평가지원
 - 민간자원 개발·연계, 교육·조사 연구사업
 - 충청북도 특성화 시책사업 추진 지원
 -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업무 등

4. 검토의견

가. 주요내용

-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「2018~202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지침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4항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사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종합의견

-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은 시·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운영·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·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
-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, 아동의 보호, 교육, 문화, 정서지원, 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시·군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것임.
- 다만,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철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, 선정 후에도 수시 지도 점검으로 지원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할 것임.

참고 ①

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

□ 시군별 시설 현황

(단위:개소)

구분	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시설수	185	77	36	9	7	3	9	4	7	9	18	6
아동수	5,321	2,256	1,057	217	184	77	241	118	198	252	551	170

□ 사업별 예산 현황

(단위:백만원)

연번	사업명	지원금액	사업내용
계	9개 사업	19,804	
1	종사자 감수성향상 워크숍 (도비 100%)	15	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발표 등
2	운영비 지원 (국 50%, 도 15%, 시군 35%)	11,346	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※ 시설별 월 4,188천원 ~ 5,871천원
3	아동복지교사 지원 (국 50%, 도 15%, 시군 35%)	2,204	전문프로그램(영어,독서 등) 지원
4	이용아동급식 지원 (도 6%, 시군 94%)	5,273	급식 제공(4,000원/1식/월 22일)
5	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(도 40%, 시군 60%)	495	월 100천원/1인 지원
6	환경개선 (도 40%, 시군 60%)	150	노후시설 환경개선 5,000천원/개소
7	어깨동무 한마음페스티벌 (도비 100%)	30	오감체험활동, 공연·작품발표회 등
8	지역아동센터 총복지원단 (국 50%, 도 50%)	169	컨설팅, 평가지원, 종사자교육, 민간자원연계지원 등
9	운영비 추가지원 (도 40%, 시군 60%)	122	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※ 시설별 연 600천원 ~ 900천원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“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□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
제10조(지휘·감독 등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
2.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
3. 관계법령,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
4.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5. 수탁기관이 파산,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

6. 그 밖에 공익상 관리·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

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(2015.3.27.)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」

제6조(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·업무주관실·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·과·소장이 된다.

제8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□ **보건복지부 「2018~202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지침」**

㉞ **지원단의 위탁**

- (위탁기준)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및 평가결과(기존 수탁자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
 - 다만,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의 계약을 갱신하여 위탁할 수 있음

(계약기간) '18.1. ~ '20.12.(3년)

- (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) 수탁자의 선정을 위해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함

-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함

- 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②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④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

- (위탁계약)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
-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- 위탁계약기간
-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
-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-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-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- 기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